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59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소병철・백혜련・김남국
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범계

박주민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863호, 2020. 1. 14. 공포, 7. 15. 시행)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의4제4항, 제89조의6제5항, 제97조의2제1항및 제97조의4제3항).

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4제4항 중 "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"를 "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"로 한다.

제89조의6제5항 중 "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"를 "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"로 한다.

제97조의2제1항 중 "지방검찰청검사장은"을 "수사기관의 장은"으로, "검찰 업무의"를 "업무의"로 한다.

제97조의4제3항 중 "지방검찰청검사장을"을 "수사기관의 장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의4(공직퇴임변호사의 수	제89조의4(공직퇴임변호사의 수
임 자료 등 제출) ① ~ ③ (생	임 자료 등 제출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	4
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	
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	
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	
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<u>지방</u>	<u>관할</u>
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	수사기관의 장에게
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	
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89조의6(법무법인 등에서의 퇴	제89조의6(법무법인 등에서의 퇴
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)	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	5
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	
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	
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	
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	
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	
신청하거나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	관할 수사기관의 장
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.	<u>에게</u>

⑥ (생략)

제97조의2(징계개시의 신청)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 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97조의4(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의 결정) ①·② (생 략)

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 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(징계개시를 신청한 윤 리협의회 위원장이나 <u>지방검찰</u> 청검사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(b) (현행과 같음)
제97조의2(징계개시의 신청) ①
수사기관의 장은
업무의
② (현행과 같음)
제97조의4(대한변호사협회의 장
이 겨저) ① . ① (처체고 가오)
의 결정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의 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
3
③
3
③